

주의사항

- 본 수첩은 입찰시는 물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함.
-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되며, 동법 제9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.
- 본 수첩의 기재 내용을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인이 휴대하여서는 아니됨.

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1.8.31.>

건설업등록수첩

업종	철강·구조물 공사업	등록번호	서초-08-21-01
주력분야	철강·구조물 공사		
상호	(주)코스틸	대표자	박성혁
주된 영업소 소재지	서울 등대문구 신기정로 122, 4층 (천동동, 하우스텔리)	법인등록번호 (생년월일)	110111 -0211641
국적 (소속국가명)	대한민국	등록일자	2008.01.14.

위 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
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.

2022년 01월 17일

동대문구청장(의)
그처자이
2000년